

『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5년 6월 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- 가.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조례 제·개정과 예산안 심사 등 지방의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회의가 파행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 주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음.
- 나. 이에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·기피하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파행적인 의회운영을 차단하고,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하는 민주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최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·기피하여 위원회 활동이나 안건 심사가 어려운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(안 제33조제5항 신설).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7일(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의회의장 (참조 : 인천광역시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05, 팩스 032-440-8762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주 소 : ○성 명 : ○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참고자료

-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·기피하여 위원회 활동이나 안건 심사가 어려운 때에는 부위원장 선출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 33조(부 위 원 장)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2명을 둔다.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.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. 다만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없을 때에는 선출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. ④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선출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. <u><신 설></u>	제33조(부위원장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 ⑤ <u>위원장이 위원회의 개최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·기피하여 위원회 활동이나 안건 심사가 어려운 때에는 부위원장 선출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</u>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☐ 지방자치법 ○ 제62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참고; 국회법 제50조(간사) ①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둔다.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.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. ④ 위원장이 결위된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. ⑤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최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·기피하거나 제3 <u>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</u> <u>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소속의</u> <u>간사중에서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</u> <u>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</u>